

유엔환경개발회의와 환경교육에 관한 국제적 동향

최 석 영

(외무부 과학환경과 서기관)

I. 서 문

지난해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20년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이후의 진전사항을 종합 평가하고, 향후 새로운 국제질서의 전개방향을 예고한 역사적인 국제회의였다.

「하나뿐인 지구보호」를 모토로 한 스톡홀름회의는 세계환경문제를 범세계적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회의로서, 세계환경보존의 대헌장(Magna Charta)이라 지칭되는 스톡홀름 선언을 채택하고 1백 9개의 행동계획을 합의함으로써, 환경문제를 비로소 인류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부각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의 큰 의의는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70년대초의 국제적 분위기가 냉전속의 첨예한 이념대립과 경제의 남북문제에 갇혀 정치·안보 및 경제우선의 기조가 팽배해 있었고, 스톡홀름회의가 각료급 회의로서 인간환경 문제에 치중하여, 환경문제를 근본 발생원인인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와 연계시키지 못하였던 관계로, 지구환경 문제라는 새로운 이슈를 철저히 가릴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82년도 연례 보고서는 환경분야의 국제협력을 실망적이라고 규정하였듯이,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제기된 것은 정치·안보 문제를 주축으로 하던 냉전체제가 흔들리고 국제질서의 다원화

움직임이 구체화된 80년대 후반부터라 할 수 있다.

지구환경문제의 사회·경제적 원인분석과 미래지향적인 대응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은 1987년 "Our Common Future"란 제하에 발간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보고서(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와 유엔환경계획(UNEP)의 "2000년대를 향한 환경전망"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들은 환경이 지탱가능한 범위내에서 개발을 추진해야 된다는 지속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새로운 명제하에 환경문제의 사회·경제·정치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제사회는 오존층, 유해폐기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독성화학물질등 광범위한 환경사안에 대한 법규범화 작업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각종 국제회의 및 정치·지역그룹의 회동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1989년 유엔총회가 범세계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체화하고 21세기를 향한 행동강령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92년 6월에 국가정상급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개최키로 한 결의(UNGA 44/228)도 고조되는 국제 관심의 반영이었다.

리우회의는 118개국의 국가정상급 대표들이 참석하여 지구정상회의라고도 불리우고 있지만, 그 토의 분야 또한 사회·경제의 구조적 남북 문제를 직접 다루면서 방대한 환경사안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체제를 수립코자한 점에 비

주어 역사상 유례가 없는 회의였다.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이러한 논의동향은 환경교육분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환경과 개발의 조화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진에 있어 환경교육의 역할평가와 교육방향의 재조명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리우회의 이전부터도 UNESCO, UNEP, UNDP 및 UNICEF 등 관련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데 있어 환경교육·홍보 및 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1977년 UNESCO와 UNEP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환경교육에 관한 Tbilisi 정부간회의가 채택한 선언과 권고는 리우회의 제36장의 작성 기반이 되었다. 또한 1987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환경교육과 훈련에 관한 회의에서는 IEEP(UNESCO/UNEP 국제환경교육계획)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가 의제 21의 관련 항목 작성에 반영되었다.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제 36장은 “교육, 공공홍보 및 훈련의 증진”에 관한 실천계획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방향의 재설정, 공공인식 증대 및 훈련증진 등 3개 환경계획의 기반, 목표 및 추진방안과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의제 21의 제38장(국제제도문제)은 의제 21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제제도의 개편과 활성화를 규정하고, 의제 21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시, 평가할 지속개발위원회(CSD)를 설치하였으며, 각 국제기구는 의제 21의 관련 활동상황과 각기구의 이행계획과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그결과를 CSD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환경교육분야의 계획과 활동도 UNESCO와 UNEP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화될 전망이다.

본고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과 리우회의를 계기로 한 국제환경 문제의 대응전략을 검토하고, 이에 병행된 환경교육, 홍보 등에 관한 국제적인 대응전략을 관찰해 보기로 한다.

II. 유엔환경개발회의와 그후 1년

1. 회의 결과

리우회의는 2년6개월간 줄다리기 협상의 결과로써 「리우선언」, 「의제 21」과 「산림원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회의기간 중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기후 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에 1백50여개국이 서명하였다.

리우선언이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의 기본원칙이라 한다면, 「의제 21」은 21세기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라 할 수 있다.

5개항의 전문과 26개항의 원칙으로 구성된 「리우선언」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지구동반자관계의 수립을 위하여 각국에 차등적인 공동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오염자 부담원칙, 예방조치, 환경영향평가 및 주요 사회단체의 역할등 환경보호 입장을 강조하는 선진국의 요구사항과 개발권, 선진국의 對개도국 지원, 생산 및 소비양식의 변화와 환경을 이유로 한 불공정한 무역규제조치의 금지등 개도국의 요구사항을 교묘히 절충하는 선에서 타결되었다.

전문과 40개 장(chapter)으로 구성된 「의제 21」은 1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로써 ①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② 대기, 해양, 폐기물, 토지자원등 각종 환경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③ 여성, 청소년, 경제계등 사회각계 각층의 역할 ④ 필요한 법체제와 제도장치설치, 기술이전, 소요자원 확보방안 및 환경교육등에 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행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의제 21」은 환경문제의 발생원인으로부터 각종 환경사안의 해결방안을 규정하고, 이의 실효적 이행상황을 평가, 감시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역동적이며, 자율적인 종합계획서라 할 수 있다.

「의제 21」이 구속력 있는 범규범은 아니지만 각 의제가 매우 세부적인 정책방안을 제공

하고, 향후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각국은 지구환경보전이라는 대의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각 실천 계획의 교섭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 반영을 위하여 첨예한 대립 양상을 표출했다.

특히 재원문제, 기술이전 문제, 유엔체제개편 등의 제도장치 문제 및 산림문제 등 회의 막바지까지 격렬한 협상을 벌였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경과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원문제는 엄청난 규모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차이로 리우회의 개최전까지 협상문서의 초안작성에도 실패하였던 협상의 핵심사항이었다.

UNCED사무국은 1993-2000년간 「의제 21」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약 6천억불(연평균 7백 50억불)로 추산한 바, 현재 전세계의 공적개발원조(ODA)가 OECD국가 GNP의 3.5% 수준인 연평균 약 5백억불인데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의 비용인 것이다.

이번 리우회의에서는 기존의 재정체제를 확대발전 시킨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선진국이 2000년까지 ODA를 GNP의 0.7%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개도국의 주장과 목표시한 설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선진국의 입장이 대립하여, ODA 및 GEF의 확대와 운영방안의 개선에는 합의하였지만, 결국 목표시한 설정에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대신 개도국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의제 21」을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을 문서에 포함시키고, 「의제 21」의 이행상황을 검토,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속개발위원회(CSD)에서 재원확보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소 불안스러우면서도 적절한 타협을 모색하였다.

둘째, 기술이전 문제도 주요한 쟁점사항으로써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청정기술의 실질적인 이전 필요성과 지적소유권의 보호 필요성간의 상충되는 관계를 여하히 절충하는가에 초점이 모아졌었다.

개도국은 기술의 특혜적(preferential), 비상업적(non-commercial) 이전이 절실히 필요함을 주장한 반면, 선진국은 특허등 지적소유권의 우선보호를 주장함으로써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공공소유 기술은 그 이전을 촉진하는데 합의했고, 재산권적 기술등 민간 소유 기술은 선진국이 개발원조의 일환으로 비상업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합의한 것이다. 특히, 재산권적 기술을 소유한 기업이 지적소유권을 남용, 약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허의 강제 실시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적 소유권의 남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였다 하겠다.

셋째, 제도장치 마련과 관련, 이번 회의에서는 「의제 21」의 이행상황을 검토, 감시하기 위한 지속개발위원회(CSD)를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설치키로 합의하고, 유엔 산하기관의 업무협조 및 조정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권능등은 92년도 제47차 유엔총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제1차 회의는 93년 6월 소집되었다. 이 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의제 21」의 이행상황에 대한 각국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이를 분석, 보고하는 것으로써, 각국은 의제 21의 실천여부를 정기적으로 유엔에 보고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되었다.

넷째, 토양, 지하수, 대기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다양한 사회,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산림문제이다. 선진국은 산림, 특히 열대우림의 보전과 보호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산림보호에 대한 각국의 의무를 규정코자 하였고, 반면 개도국은 자국의 주권적 관할하에 있는 산림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의무를 부과하는데 반대하고, 개도국의 경제성장, 발전 및 무역증진을 위하여 산림의 개발이 절대적임을 주장하였다.

마지막 쟁점으로 흔히 그린라운드라 불리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문제를 들 수 있다. 개

도국은 환경을 구실로한 일방적인 무역규제 조치를 금지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 선진국은 무역규제가 환경보호를 위한 유용한 수단인 하나임을 지적함으로써 근본적인 입장대립을 보였다.

리우선언의 원칙 12와 해양, 산림, 법체계, 환경과 무역등 의제 21의 무역관련 조항은 공히 환경을 이유로한 일방적 무역조치가 자의적 불공정한 차별적 이어서는 안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에 기초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하고 무차별적인 무역규제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하겠다.

2. 회의의 의의와 특징

리우회의의 최대성과는 사상 유례없이 많은 국가정상급 정치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상반된 명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지구차원의 협력원칙과 실천계획을 마련하는데 정치적인 결단을 보여줌으로써, 지구환경문제를 국제정치적의 최대 현안중의 하나로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기후 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에 1백 50여개국이 서명함으로써,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고조된 국제관심을 반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지속 개발위원회를 설치기로, 합의함으로써, 지구환경문제를 냉전의 와해 이후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된 유엔의 감시하에 두는 제도장치를 마련한 것도 커다란 의의라 하겠다.

또 한가지는 지구환경 현안의 대처 주체를 정부에 국한시키지 않고 일반 사회각계층과 민간단체의 강화된 역할이 필수적임으로 확인하고, 각국의 환경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그들의 참여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활동방안을 나열한 것도 괄목할 만한 성과다.

UNCED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동향은 지구환경 보전의 필요와 이를 위한 지구동반자 관계의 형성에는 이견이 없으면서도, 환경보전과 개발의 우선 순위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대립양상이 노정되고 국익 우선과 기득권을 최대한 확보키 위한 각국의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환경문제를 중요한 새로운 남·북대립의 시발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UNCED는 협상이 종결이 아니라, 보다 방대하고 복잡한 협상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번 회의의 계기로 형성될 새로운 국제질서의 전개전망과 특징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환경문제의 정치·외교문제화 추세이다. 각국은 지구환경 보호라는 명분하에 자국의 국익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치열한 외교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으로서는 자국의 높은 환경기준에 따른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제 경쟁력과 환경보호론자의 강한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 규제의 강화를 주장할 것이며, 반면 개도국은 개발권의 확보 그리고 자국 관할하의 자원에 대한 주권적 개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리우 회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검토, 감시하는 기능이 유엔체제내에 부여됨으로써,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유엔의 권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셋째, UNCED 합의사항의 실효적인 이행과 강제적 이행능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환경분야에 대한 법규법화 작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선 산림, 사막화, 독성화학물질, 담수 및 해양분야에 대한 협약작성 교섭과, 기후협약, 생물다양성협약등 이미 채택된 협약에의 비준 및 가입압력이 가중되고 부속의정서 작성 교섭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넷째, 환경보전과 개발추진이라는 상이한 명제를 절충시킨 리우회의의 결과 이행을 위하여 각국은 개발위주의 기존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관련 국내제도, 조직 및 특히 정부차원의 일방적인 대응방향에서의 탈피와 각종 사회, 경제 그룹의 참여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전

환이 수반될 것이다.

다섯째, 환경과 무역의 경제·통상문제화 추세이다. 60~70년대의 환경보호 노력은 소극적인 보전차원에 치중한 반면,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하에서는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사회·경제적 수단에서 직접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오염자 부담원칙, 사용자 부담원칙등과 환경세, 부담금제등의 활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환경과 무역의 관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협의가 전개될 것이다. 이미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이 그 이행의 강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가입국과의 무역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리우회의 이후에는 환경을 이유로한 무역정책의 명료성 제고 및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GATT와 UNCTAD등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토의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의 사후해결 보다는 사전예방 조치를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과 피와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여도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소위 “과학적 불확실성이 대응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일반화되고 있다. 오존층 파괴 및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논쟁이 협약 협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채택이 된 것은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3. 그후 1년

지난 1년간은 주로 리우회의의 협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기반조성에 집중적인 노력이 투자되었다. 리우회의의 준비과정이 일반의 비상한 관심속에 진행되면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전략의 당위성과 방향에 치중되었다고 한다면, 지난 1년간은 정부 국제기구 및 비정부간 기구등 전략수행기관의 분주한 작업속에 진행되어 왔다.

혁신적인 변화는 역시 유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제47차 유엔총회는 92년 12월 유엔환경개발회의의 결과를 추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설치, 운영을 포함한 10개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유엔사무총장은 의제 21의 효과적인 이행지원을 위하여 유엔사무국의 조직을 혁신적으로 개편하였다.

93년 2월에는 의제 21 이행상황을 평가, 감시임무를 수행할 지속개발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의 이사국이 선임되었다.

지구정상회의 개최 1주년이던 6월 14일부터 2주일간 뉴욕에서 제1차 CSD 본회의가 개최되어 97년까지의 전략수행조직 및 계획을 확정하였다. 여기에는 각 국제기구 및 정부의 활동전략도 함께 협의되어, 바야흐로 지구정상회의의 효과적인 이행체제와 감시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셈이다.

리우회의 이후 최대현안의 하나는 개도국의 의제 21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 제공하는 문제이다. 개도국은 충분한 재원공급이 안되는 경우, 의제 21의 이행에 동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 비추어 리우회의의 성패는 재원의 원활한 확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년간 선진국은 재정문제를 OECD와 G7 정상회의등의 주요의제로 상정하여 원조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있고, 지구환경금융(GEF)의 대폭증액에 대하여도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또한, 의제 21이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유해폐기물에 관한 바젤협약, 오존층 보호 관계협약등의 조속한 가입과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사막화 방지협약, 산림원칙 선언의 규범화,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국제적 규범작성을 요구했으며, 이는 92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하여 공식 추진되었다. 지난 1년간에는 각종 정보간 회의가 개최되어 환경협약의 작성과 이행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지난 1년간의 변화를 어떤 국제적 사건후 수반되는 일반적인 대응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은 지나친 단계일 것이다. 리우회의 이후 환경과 개발 문제는 각급 국제회의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정도가 그 국가의 성숙성을 가늠하는 것으로 까지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환경 문제는 일과성의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간 국제관계의 중심부를 지배할 새로운 바람인 것이다.

Ⅲ. 환경교육에 관한 국제적 동향

1. 개요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구차원의 목표와 계획, 활동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유엔기구가 중심이 되어 국제환경교육 계획을 작성, 시행토록 권고하였다. 이 권고에 따라 “정부간 환경교육회의”가 UNESCO 주관하에 1977년 구소련 Tbilisi에서 개최되어 교육의 목표와 원칙을 작성하는데 합의하였다.

Tbilisi 회의는 환경교육의 기본지침에 대한 선언과 구체적 이행을 위한 41개 권고를 채택함으로써, 환경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노력의 방향을 설정한데 큰의의가 있다.

Tbilisi 회의에서 합의된 환경교육의 3대 목표는 ① 경제, 사회, 정치 및 생태계의 상호 연관관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제고 ② 환경보호에 필요한 지식, 가치관, 태도 및 기술등의 취득기회 제공 ③ 환경보호를 위한 개인, 그룹 및 사회의 태도와 행동패턴 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회의 개최 10주년을 기념하여 1987년 모스크바에서 UNESCO/UNEP 주관하에 환경교육 및 훈련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Tbilisi 회의의 권고사항의 국제적인 이행성과와 진전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1990년대를 향한 환경교육의 전략을 채택하고, 차기회의를 1997년에 개최기로 하였다.

그후 1990년 태국 Jomtien에서 개최된 “모든 이를 위한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도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교육의 역할과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동향은 리우회의의 교육분야 전략 및 실천계획 작성의 주요 골간을

이루고 있으며, Tbilisi 회의와 그 이후 회의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점은 전자가 환경에 대하여만 중점을 둔 반면, 후자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 즉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진에 필요한 교육의 역할과 실천계획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지구환경보호 및 21세기를 향한 국제적인 활동의 근간으로 확립되면서, 그간 환경의 보호, 보전측면만 강조해오던 활동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즉, 환경과 괴의 근본원인이 인구문제, 빈곤, 산업화, 도시화, 에너지문제등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문제 및 경제의 남·북문제등 구조적인 국제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도 결국 사회, 경제적인 개발을 통하여만 하므로 환경문제와 개발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였다.

자연히 국제차원에서의 환경교육도 이러한 개념변화를 수용하고, 환경과 개발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윤리적 책임을 성취하는데 초점을 두게 되었으며, 미국, EC국가등 선진국가들도 1980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환경위주의 소극적 교육을 탈피하여, 환경과 개발에 관한 포괄적인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 오고 있다.

리우회의에서 합의된 의제 21은 환경과 개발의 사회, 경제적인측면(제 1부), 제반환경이슈(제 2부) 및 이행방안(제 4부)을 제시하고, 제3부에서는 의제 21의 실천주체인 청소년, 여성, 노동조합, 민간단체 및 산업계등 9개 사회그룹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 36장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교육, 홍보, 훈련의 전반적인 목표와 실천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의제 21의 실천에 필요한 고도의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지침인 리우선언(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환경교육, 정보 및 자료의 접근, 각 사회계층의 역할 강화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은 실현하기 위한 27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교육의 새로운 목표와 지침설정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의제 21 제36장

의제 21 제36장은 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쇠퇴 ② 공공의 인식증진 ③ 훈련촉진 등 3개 활동분야를 규정하고, 각 분야별 실천 기반과 목표, 활동계획과 이행방안을 열거하고 있다. 환경과 개발의 각분야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의제 21의 각장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제 36장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교육, 홍보, 훈련의 포괄적인 제안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여기서는 제36장의 첫 활동분야인 교육쇄신 분야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가. 실천 기반과 목표

제36장은 교육, 공공인식 및 훈련을 인간과 사회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케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 추구의 핵심요소로 평가하면서, 교육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합치되는 환경과 윤리의식, 가치관, 생활태도, 기술 및 행동의 개발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과적인 공공참여를 성취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과 개발 교육은 물리·생물학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환경과 인간개발과의 상호 역학관계를 다루고, 정규·비정규 교육방법과 효과적인 정보전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부문의 실천기반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천목표로는 ① 기초교육에의 보편적 접근 보장과 문맹퇴치 ② 제반분야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인식의 확대 ③ 모든 계층에 대한 환경과 개발교육의 확대 ④ 환경과 개발개념의 통합화(integration) 증진 등 4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나. 실천계획

제36장은 교육부문의 실천계획에 15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환경과 개발 개념을 통합하는 교육정책의 쇠퇴방안, 교육자료 및 정보의 교류·확산방안, 사회 각계각층의 보편적 교육참여 추진방안과 유엔기구의 역할 등 크게 4가지 세부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육정책 쇠퇴방안

① Jomtien 회의 권고사항 이행과 실천계획 작성에 노력하고, 교육의 기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국가전략과 실천계획을 준비함.

-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교육 수단과 범위의 확대, 교육지원정책의 개발, 교육재원의 동원, 각종 사회, 경제적 장애 제거
- 교육계획의 작성과 이행에 있어 민간기구의 역할과 기여 인정

② 각국은 3년 이내에 환경과 개발을 통합 고려하는 새로운 전략과 정책을 모든 교육단계에서 수립, 시행함.

- 새로운 정책,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검토를 위한 비용, 수단, 추진일정 파악
- 환경과 개발문제, 사회·문화 및 인구적인 측면과 그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의 재검토 필요

③ 환경, 개발, 교육, 성별 및 민간단체등 대표로 구성된 국가환경교육조정 자문기구를 설치함

- 동반자관계 형성촉진, 재원동원, 정보교류 및 국제협력의 창구로 활용 가능

④ 교육당국은 민간단체의 조력을 받아 교사, 행정관료, 교육기획자 및 비정규 교육자의 사전교육, 재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함.

⑤ 각급 학교에서 학생과 직원의 참여하에 환경 활동 작업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이 협력함.

- 학교는 식수, 공중위생, 생태계 및 식량관련 지역연구에 참여토록 함.

⑥ 교육당국은 환경과 개발 교육의 정착을 위하여 입증된 교육방법을 증진하고 혁신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함.

교육자료 및 정보의 교류, 확산방안

① 5년 이내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교육과 인식 촉진을 위한 기술 및 능력배양을 위한 정보교류를 강화함.

- 적절한 교육도구 준비를 위하여 국가간

협력 및 각 사회그룹과의 협력을 증진함.

② 환경과 개발 교육을 위한 대학 및 기타 활동체제를 지원함.

-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연구 및 교육방법 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지역 정보망과 대학의 활동 구축

- 업계 및 기타 유관단체, 외국과의 협조체제 강화

③ 환경과 개발에 관한 과학, 법분야의 연구 및 교육을 위한 국가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강화, 설치함.

사회 각계각층의 보편적 교육참여 촉진방안

① 지속가능한 개발의 대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정규 교육을 촉진, 지원함.

- 지방, 지역 및 국가차원에서 비정규 교육 지원 촉진

② 여성, 원주민, 민간단체의 협조하에 성인 교육, 직업교육, 정책결정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함.

③ 여성 및 아동에 대한 교육참여 기회 확대와 원주민에 대한 훈련을 제공함.

국제기구의 역할

① 유엔체제는 향후 2년내에 교육의 우선순위 설정 및 자원배분을 검토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재검토함.

- UNESCO와 UNEP가 공동추진하는 IEEP는 각국가, 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리우회의 합의사항을 유엔체제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 지역기구와 국가기관도 각계의 환경과 개발 교육의 수요를 평가하고 IEEP와 유사한 계획을 수립

② 유엔은 교육관련 리우회의의 결정에 관하여 감시 및 평가하는 역할을 유지함.

다. 이행 방안

제36장은 교육부문의 실천계획 이행을 위하여 1993~2000년간 대략 80억~90억불이 소요 이중 35~45억불은 무상 또는 양허성 자금)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계획이행을 위하여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되 환경, 개발교육분야 예산에 우선순위 부여, 사실 학교에 대한 각계의 재정지원 장려, 매스컴의 활용 촉진, 선진·개도국 대학간 자매결연 장려 및 교육을 위한 부채타감(debt for education swaps)의 장려등을 열거하고 있다.

IV. 결 론

의제 21의 제36장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전술한 리우회의의 개최 배경과 의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의제 21의 성격, 작성과정 및 장기적 목표등에 관하여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의제 21은 지구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경제 및 환경분야의 광범위한 사안에 대한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력 있는 범구범이 아닌 권고 또는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의제 21의 작성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참여한 대립속에 타협을 이룬 문서로서 내용이 다소 약화되거나 모호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제 21의 실천계획에서 민간의 정책결정에의 참여제고, 각 사회그룹의 역할, 지방정부 및 주민의 역할등을 강조하고, 환경과 개발 문제를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면서 환경문제의 사회·경제적 연관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대기, 해양, 폐기물 및 생물 다양성등 각종 환경문제의 해결에 대한 접근방식과 수단이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제 21 제36장에서 제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교육의 실천 기반과 교육의 쇄신 방향은 이러한 변화와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앞으로의 환경과 개발 교육은 다음과 같은 커다란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방향전환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 냉전체제의 완화로 인한 국제 정치의 다원화와 유엔체제의 기능강화
 - 국제적인 사회, 경제의 상호 의존성 강화
 - 보편적, 민주적 가치관의 확산
- 새로운 환경과 개발교육은 다음 사항을 특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환경과 개발교육의 대상범위 확대, 교과

- 과정의 세분화 및 전문화와 상호 연관성의 증진
- 환경과 개발의 상호 연관성제고 및 종합적 고려
- 정규, 비정규 교육의 확대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수요충족 및 인식의 전환을 유도